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18358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20364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18358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화

담당변호사 김상정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윤준석

변론 종결 2023. 5. 11.

판결 선고 2023. 7. 13.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골프장 건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3. 5. 29. 설립된 회사이다.
-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E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피고 B은 D의 회장이자 그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이자 그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D의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

- 1) D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 9. 14. F은행과 사이에 골프장 건설사업 프로젝트 금융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F은행으로부터 49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 2) D는 세종특별자치시 G 외 8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골프장 부지로 매수하고, F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신탁하였다.
- 3) D는 2009. 12. 30.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인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 등을 골프장 주변 이웃들에 대한 민원 합의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전용부담금, 골프장 사업에 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 I 외 2필지 토지에 대한 임대차 및 근저당권설정 관련 비용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다.
- 4) D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F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H은 2013. 5. 2.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개시하였다.1) 5) 한편, 2008. 1.경 피고 B으로부터 D의

주식 80%를 인수하면서 그 후부터 실질적으로 D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여 왔던 J은 2012. 5. 2. 골프장 사업 및 관리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3. 5. 15. 대학 동창인 L로부터 K의 명의로 5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16억 원을 지급받고(2013. 6. 14. 나머지 34억 원을 지급받았다), 위 16억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하여 2013. 5. 16. F은행이 실시한 7회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160억 원에 낙찰받았다.

6) K은 2013. 5. 22. F은행과 사이에 F은행이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대출채권 등 양도계약을, 같은 날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K과 F은행은 위 대출채권 등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대금은 낙찰대금 160억 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위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K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약정하였다.

7) 그러나 K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6. 21.까지 H에 잔금 14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6. 24. H으로부터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8) M는 K의 대표이사로서 2013. 7. 5. H에게 '계약해지 유예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K이 2013. 5. 22. 귀사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F은행과 체결한 대출채권 등 양도계약의 잔금일이 도래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3. 7. 8. 잔금 중 30억 원을, 2013. 8. 31. 나머지 잔금(연체료 포함)을 지급하겠으니(동일자에 잔금 지불이 안 될 경우 2013. 7. 8. 지불예정인 30억 원은 위약별로 포기함), 계약해지를 2013. 8. 31.까지 유예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H이 이와 같은 K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9) K은 2013. 7. 8. H에 매매대금 잔금의 일부로 L로부터 차용한 34억 원 중 30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거나 이미 지급한 일부 매매대금이 위약금 내지 위약별로 몰취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인수 등

1) 원고가 2013. 5. 29. 설립될 당시 주주는 N(40%), O(48%), P(12%)이었고, M가 2013. 6.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13. 7. 15.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결을 하였다.

1. Q 사업부지 인수 및 인허가 승계에 관한 사항

1) H의 이 사건 사업부지 공매입찰 계약자인 K의 계약자의 지위를 공매입찰 계약조건과 동일조건으로 당사와 H, K 삼자간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승계계약을 체결, H의 공매 신탁토지를 인수하여 Q 골프장 및 콘도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

2) H의 공매 신탁토지를 인수하기 위하여 당사와 H 및 K과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승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K이 H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한 16억 원 및 잔금 일부로 지급한 30억 원과 인수조건으로 제시하여 K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 4억 원 합계 금 50억 원은 K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하여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상환기간은 2014. 3. 31.까지로 하며 차입금리는 2% 이내로 하도록 한다.

4) 기타 신탁토지 외 토지의 권한일체를 인수하는 금액은 450,000,000원으로 하고 D가 공사업체 및 용역업체 등의 유치권을 정리하여 토지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하여 인수받는다. 2013. 5. 31. D에 대여하여 준 450,000,000원은 인수금액으로 전환하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D가 F에 기 제출한 인허가 및 운영 권리 포기각서에 의거 인허가 승계는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5) 민원합의금, 인허가 관련 부담금 등의 승계금액은 4,078,267,990원으로 실 부담금 승계로 한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D의 Q 설계용역 등 관련업체 미지급 채무는 부담금 등의 승계금액 범위 내에서 승계하기로 하며 승계할 경우 승계금액만큼 부담금 등의 승계금액은 지불한 것으로 갈음한다.

6) 이 사건 사업부지 인수 및 인허가승계, 부담금 등의 승계에 대한 D의 승계사항이 완료되었을 때 F은행으로부터 인수한 D에 대한 채권은 탕감한다.

7) D는 위의 공매신탁토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사무실 집기비품 외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차보증금도 급여, 퇴직금 등으로 소모될 것이 예상되어 채권추심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원고는 2013. 7. 17. K, H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K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H과 매수인 K, 승계매수인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 승계에 합의하며, 승계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 및 승계매수인이 각 1부씩 보관(인감증명서 첨부)하기로 한다.

1. 매매대상 부동산

- 이 사건 사업부지

2. 매매계약의 내용

- 매도인: H

- 매수인: K

- 승계매수인: 원고

- 매매가: 일백육십억 원(계약금 일십육억 원 및 잔금 일부 삼십억 원 납부, VAT 없음)

- 매매계약 해제 유예기간: 2013. 8. 31.

3. 승계계약 내용

- 매수인 K은 승계매수인 원고로 기 체결한 매매계약의 승계를 요청하며, 기납부한 계약금 및 잔금 일부는 승계매수인의 계약 체결시 계약금 및 잔금 일부로 처리하기로 함.

- 승계계약의 잔금 납부기일은 기 체결한 매매계약의 납부일과 동일하며, 매수인과 승계매수인의 연대책임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하기로 함.

- 승계매수인 원고는 H과 매수인 K간 계약한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로 이행하겠다는 약속하며, 매수인 K은 승계계약이 체결된 이후 본 부동산 및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됨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승계매수인 원고는 매매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승계매수인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 유예기간(2013. 8. 31.)까지 잔금(114억 원) 및 매매계약서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안 될 경우 기납부한 금원(사십육억 원)은 위약벌로 포기하며, 매도인에게 귀속되는데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4) 원고는 2013. 7. 22. 금융기관을 통해 R조합으로부터 30억 원, S조합으로부터 45억 원,

T조합으로부터 50억 원 등 U 컨소시엄으로부터 합계 125억 원을 대출받아 H에 매매대금 잔금 114억 원을 지급하였다.

5) 또한 원고는 2013. 7. 22. D와 사이에, D가 골프장 진입로 등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대출금으로 매수한 세종특별자치시 V 외 14필지 토지에 대한 권한 일체를 공사업체 등의 유치권을 정리한 상태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그 대금으로 D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고 D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를 별도의 대금 없이 승계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부담금 등, 즉 골프장 인근 마을에 대한 민원 합의금 870,000,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2,858,267,990원, 세종특별자치시 I 외 2필지 토지에 관한 임대차 및 근저당권설정 관련 비용 350,000,000원 합계 4,078,267,990원으로 확인하고, 원고가 D에게 위 4,078,267,9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 등의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6) 원고는 D와의 위 합의에 따라 2014. 3. 4.부터 2015. 2. 16.까지 총 6회에 걸쳐 미지급금 명목으로 132,156,850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2017. 1. 3.부터 2017. 3. 10.까지 총 11회에 걸쳐 D의 채무 1,779,958,756원을 대납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7)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7008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4)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4,078,267,990원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미지급금 및 대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일부청구로서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8. 7.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에게 1,00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0985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4)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D에게 지급하기로 한 4,078,267,990원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미지급금 및 대납한 부분, 위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에게 1,166,152,384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044호) 2021. 8. 18.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21.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12, 15 내지 17, 18, 20,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H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K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할 당시, F은행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도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1,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비록 원고가 2013. 7. 15.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전액 탕감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M, W 등이 D와 공모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이거나 권한남용이고,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므로 그 이사회 결의는 법률상 무효이고, M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위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이며,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시킨 것은 민법상 면제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데, 위 이사회 결의가 대외적으로 D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은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보증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2013. 7. 15.자 이사회 결의가 있었을 때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3.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여부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F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F은행이 개시한 공매절차를 통해 K이 이 사건 사업부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F은행과 K 사이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양도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대금은 낙찰대금 160억 원에 포함되고, 위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자의 지위가 K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7. 22. H에 낙찰대금 잔금 11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 제1조에서는 "D는 대주단 은행이 F은행에 대하여 원금 495억 원에서 기 변제된 약 5.9억 원을 차감한 대출금과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주단 은행인 F은행은 위 채무에 대하여 채권 및 신탁부동산 공매를 실시하여 원고는 F의 채권 및 신탁부동산을 인수하였다"라고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할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는 제1조 제1항 정의란에 "연대보증인"은 주식회사 X, C 및 B을 말한다., "연대보증서"는 대출원리금과 기타 이 약정 및 그와 관련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차주의 연대보증인들이 이 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기타 이 약정 및 그와 관련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에 대하여 각 차주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대주에게 제출하는 연대보증서를 말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대출약정서 제7조 제7항에는「차주(D)는 연대보증인들로 하여금 적법하게 연대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주(F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대보증서는 실질적으로 '별첨 사'의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나의 1)②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면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서 예정한 대로라면 피고들이 연대보증약정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F은행과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① 기록상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양식의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대출약정서 말미(49페이지)에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주식회사 X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대표이사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는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F은행은 D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할 때도 피고들을 상대로 특별히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위에서 살핀 피고 C의 면책 요구는 실제로 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거나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

설령 피고들의 연대보증약정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7. 15. 이사회 결의를 통해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탕감함으로써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소멸한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또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출금 채무 탕감이 원고 대표이사 M 등의 배임행위 또는 권한남용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대표이사인 M 등이 2013. 7. 15. "이 사건 사업부지 인수 및 인허가승계, 부담금 등의 승계에 대한 D의 승계사항이 완료되었을 때 F은행으로부터 인수한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M 등이 2013. 7. 15.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K은 비록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고 그 후 H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총 매매대금 160억 원 중 46억 원(= 계약금 16억 원 + 잔금 30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다. 원고 역시 K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설립당시 자본금 5억 원 외에는 특별한 자산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만료시점(2013. 12. 31.)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만약 잔금지급 기일인 2013. 8. 31.까지 H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K이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6억 원이 H에 물취되고 이 사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 대출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진입로를 확보할 것,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확보할 것,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한이 없을 것(유치권 해소 등)이 전제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위 조건들 중 골프장 진입로인 세종시 V 외 14필지 토지의 경우 Y(피고 C의 친척) 등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권 명의를 D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D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D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피고 C으로부터 'D의 채권자들에게 미납금 약 42억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정된 유치권을 해소해야 하며, 피고들도 개인적으로 F은행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를 면책시켜달라.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 인허가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후 2013. 7. 15.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하고, 2013. 5. 31. D에 대여한 4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부지 외 토지의 권한 일체를 매수하는 명목으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D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약

40억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 C의 요구를 수용하는 외에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그 후 원고는 2013. 7. 22. U 컨소시엄으로부터 합계 125억 원을 대출받아 H에 매매대금 잔금 11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였고, 2013. 7. 29. 세종시에 D의 권리의무 양도양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2013. 8. 16. 세종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허가 변경) 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④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함으로써 그 결과 피고들이 그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 M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는 한편, D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을 보전해주는 대신 이 사건 사업 관련 각종 인수인계 등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이사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원고가 잔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게 된 이상 이를 두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M 등에게 원고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또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경우 D가 F은행에 대출금 495억 원 중 5억 9,000만원 상당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담보물인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3조에서는 "대상자산의 양도대금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대금만 지급할 경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전받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2. 12. 31.을 기준으로 D의 자산은 537억 상당인 반면, 부채는 620억 상당으로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M 등이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하는 대신 D로부터 그 대가로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것은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원고측에서는 법무법인 Z의 AA 변호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결과 원고에게 특별히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탕감한 것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M 등이 2013. 7. 16.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부실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한 것이 원고에게 반드시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대표이사 M 등이 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탕감한 이사회 결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M 등이 2013. 7. 16. 이사인 W, O, N 등이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7. 16.에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그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관련 불기소이유통지서(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20형제37435호)2)에 따르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W, 사내이사였던 O, N은 위 이사회 결의 내용에 대해 포괄 위임하여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사회 결의가 D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2013. 7. 29. 세종시에 D의 권리의무 양도양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2013. 8. 16. 세종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허가 변경) 승인을 받은 것은 D가 그 인허가 절차 양도에 협조하였기 때문인데, 만약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인허가 절차 양도에 협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2012년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차입금 합계 49,595,645,078원(= 장기차입금 20,193,010,000원 + 단기차입금 28,714,308,241원)이었는데, 2013년도 재무상태표에는 차입금이 540,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D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판장판사김상훈

판사김동현

판사김민지

1) 다만 이 사건 사업부지 외 우선수익자인 F은행의 관련 채권(대출금 채권)을 매수자와 F은행간

양도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다(갑 제6호증).

2) 원고는 J, M, W, O, N 등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23. 2. 17. J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